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8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추가하고,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한편, 개정 내용의 주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을 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’로 조정함(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및 부칙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 사회복지사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생략)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	1. 2. (개정안과 같음)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	3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	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「간호

4. ~ 22. (생략) ③ ~ ⑧ (생략)	4. ~ 2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부칙 이 법은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	<u>법」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 사회복지사</u> 4. ~ 22. (개정안과 같음) ③ ~ ⑧ (개정안과 같음) 부칙 이 법은 <u>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
--	---	--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6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3.

발 의 자 : 이수진·임미애·이기현

김동아·최기상·민병덕

이건태·박홍배·윤종오

장철민·추미애·김태년

정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,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신고의무자 범위에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추가하고,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·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한편,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함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 사회복지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생략)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	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,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「간호법」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의 사회

4. ~ 22. (생 략) ③ ~ ⑧ (생 략)	<u>복지사</u> 4. ~ 2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